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0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김기현 · 윤한홍 · 박성민

김대식 · 강선영 · 우재준

김미애 · 김선교 · 안상훈

조정훈 • 박수영 • 최형두

김정재・김 건・박충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 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 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청소 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 공한 자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 공하기 위하여 소지·운반·광고·소개한 자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한 자
-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운반하여 이를 판매·대여· 배포·제공할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생 략)	제작・배포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	②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	<u>해당하는</u>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	
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u><신 설></u>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
	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
	배포·제공한 자
<u><신 설></u>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
	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
	<u>배포·제공하기 위하여 소지</u>
	·운반·광고·소개한 자
<u><신 설></u>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영
	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u><신 설></u>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
	지 또는 운반하여 이를 판매
	•대여•배포•제공할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